

- 제10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-

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27~2030년도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☐ 결 정 일 : 2026. 10. 6.(화)

☐ 참석위원 : 9명

☐ 의결결과

구 분	월정수당(월)	의정활동비(월)
2027년도	2,141,700원	1,500,000원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[별표5]에 따름)
2028년도	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.	
2029년도	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.	
2030년도	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.	

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